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03

발의연월일: 2021. 1. 19.

발 의 자:최종윤·김경협·김두관

김상희 · 김진표 · 김회재

문정복 · 송영길 · 양정숙

이규민 · 이용호 · 인재근

임종성·조오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 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 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은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
	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
	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 그 밖에 주민의 재정
	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수립·시행할 수 있다.</u>